



- 원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각 섹션에 각각의 조치에 필요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있는 양식은 차량국(Motor Vehicles) 사무소 어디서나 제공되며 또한 DMV 홈페이지(dmv.ny.gov)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뉴욕주에서 처음 가동하는 모터보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본 서류 제시:

- 1. 작성을 마친 선박 등록증/소유증 신청서(MV-82B\*).
2. 소유권 증빙 자료(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뉴욕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한 소유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문서),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개인 판매(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에게로)를 통해서나 매장, 요트 중개업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 매도 증서(Bill of Sale),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판매세 완납 양식\*,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신원 증명 - 유효한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DMV 양식 ID-82\*(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한 신원 증명)에 기재된 기타 용인되는 문서 참조.
6. 법인을 대신해 등록하는 경우,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동업자 관계로 등록하는 경우,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 등록자가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소유주가 선박 등록증/소유증 신청서(MV-82B\*)의 섹션 3을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거나 작성을 마친 등록 승인(MV-95\*)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권 증빙 서류 및 소유자 신원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5, #6 또는 #7 참조).
9. 해당 수수료(수표, 현금, 우편환 또는 신용 카드):
- 16피트 미만 - \$26.25
- 16피트 이상 26피트 미만 - \$57.50
- 26피트 이상 - \$93.75
이와 같은 수수료는 3년 등록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또는 담보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10. 등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소유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자 본인의 뉴욕주 운전면허증,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사본과 서류를 제출하는 인물의 뉴욕주 운전면허증,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선박을 DMV에 등록하기 전에 1973년 이후 연식 선박의 경우 반드시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선체 ID 번호(Hull Identification Number, HIN)가 있어야만 합니다. HIN을 신청하려면 공원 및 여가 활동 관리국(Parks and Recreation) 양식 OPS-420(선박 신청서 - 선체 ID 번호)을 작성하거나 OPRHP 웹사이트(www.nysparks.com/boats)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선박 종류 - MV-82B의 3 기입란에 있는 "선박 종류" 필드 작성 시 다음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무개 - 노 젓는 배, 중앙 콘솔 소형 모터보트, 보라이더(bow rider)나 폰툰 보트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 형태.
캐빈 - 커디(cuddy)나 크루징 보트 등 승객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는 경우.
하우스 - 숙식 및 목욕 시설 등을 제공하며 보통 이동 속도가 느리고, 장거리 크루즈나 수상스키와 같은 활동적인 항해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
기타 - 레이싱, 수상 모터사이클, 수륙 양용 자동차, ATV/보트, 에어보트, 특수 제작품(novelty craft), 수초 제거선 등.

Table with 2 columns: 갱신 방법 (선박 등록증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 and 변경 방법 (선박 등록증 및/또는 소유증에 기재된 정보 변경을 위한 제출 서류). Rows include application forms, identification, and fees.

Table with 2 columns: 교체 방법 (등록증 및/또는 스티커 분실, 훼손 또는 손상 시 제출 서류) and 교체 방법 (소유증 분실, 훼손 또는 손상 시 제출 서류). Rows include application forms and fees.

소유증만 취득하는 경우 선박이 1987년식 이후 기종이며 길이가 14피트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 1. 작성을 마친 선박 등록증/소유증 신청서(MV-82B\*) 또는 소유증 신청서(MV-82TON\*)
2. 소유권 증빙 자료(2페이지 참조)
3. 소유주 신원 증명(위의 "등록 방법" #5, #6 또는 #7 참조)
4. 판매세 완납 증명 양식 FS-6T(DMV 사무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음) 또는 납부한 판매세 금액이 기재된 원래 대리점 매도 증서 및
5. \$50 수표, 받는 사람 명의 "Commissioner of Motor Vehicles".
소유증만 신청하는 신청서와 2-5번 항목은 반드시 다음 우편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Title Bureau
6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8-0322

(참고: 임대주에게 \$5의 담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양식 MV-900을 제출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 허용되는 소유권 증빙 자료

### 1. 선박을 대리점에서 신상품으로 구매한 경우(뉴욕주에서만 다른 주에서는 마찬가지로):

- 제조업체의 원산지 인증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MCO 또는 MSO) 및
- 매도 증서(모델명, 이름, 연도, 제조사, HIN, 색상, 구매자/판매자 이름과 주소, 판매 날짜 및 구매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대리점/요트 중개업자 매도 증서 원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반드시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연속 매도 증서 번호(뉴욕주 대리점만 해당)
  - 대리점/요트 중개업자의 이름과 주소
  - 판매 날짜
  - 7자리 숫자로 된 설비 등록증 번호(뉴욕주 대리점만 해당)
  - 납세자 식별 번호
  - HIN, 연도, 제조사, 길이, 선체 자재 및 추진 방식 등을 포함한 선박 설명
  - 해당하는 경우, 뉴욕 선박 등록증 번호
  - 선박이 신상품인지 중고인지 표시
  - 해당하는 판매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명세서(뉴욕주 대리점만 해당)
  - 해당하는 경우, 보상 판매 관련 정보(대리점만 해당)
  - 구매자 이름과 주소(대리점만 해당)
  -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요트 중개업자만 해당)
  - 해당하는 경우, 담보 관련 정보(대리점만 해당)
  - 구매자, 판매자와 중개업자의 서명(요트 중개업자만 해당)
  - 구매자와 대리점주 서명(대리점만 해당)

### 2.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으며 이전에 뉴욕주 또는 다른 주에 등록된 적이 있는 경우:

- 이전 소유주의 소유증 또는 양도 가능한 등록증을 새 소유주나 대리점 명의로 양도한 서류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발급한 이와 유사한 소유권 증빙 서류 양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소유증이 없는 선박의 경우), 이후 매도 증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또한
- 매도 증서(위의 #1b 참조) 및 판매세 완납 증명서(아래 참조).

### 3.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으며 이전에 뉴욕주 또는 다른 주에 등록된 적이 없는 경우:

- 제조업체의 원산지 인증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MCO 또는 MSO) 명의를 새 소유주에게 이전한 서류
- 이후 모든 개인 간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원래 소유주의 매도 증서 및
- 이전 소유주의 매도 증서(#1b 참조).

**참고:** 선박이 1987년형 이후 기종이고 길이가 14피트 이상이며 기록이 없는 경우, 뉴욕주 주민이라면 반드시 자기 명의로 소유증을 취득한 다음 새 소유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4. 구매한 선박이 미국 해안 경비대(USCG)에 기록된 경우, 또는 USCG에 기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및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록이 현재 소유주의 명의인 경우 - 소유주 명의의 USCG 기록 증명서(양식 CG-1270) 또는 외국 기록 증명서의 영문 번역본(번역자 및 세관 인증)(양식 5119A 또는 양식 368)
- 기록을 새 소유주에게 양도 중인 경우 - 이전 소유주의 미국 기록 증명서(양식 CG-1270) 사본과 새 소유주의 매도 증서
- 기록을 진행 중인 경우 - 소유권 증빙 자료 사본(소유증, 양도 가능한 등록증 또는 MCO/MSO)과 기록 신청서(CG-1258)
- 소유주가 기록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 USCG 삭제 통지서(Letter of Deletion)와 대리점 매도 증서(HIN, 연도, 제조사 및 선박 길이 기재), 또는 개인 판매인 경우 USCG 기록 증명서(양식 CG-1270)와 삭제 통지서.

## 판매세 완납 증명

- 선박을 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 원본 매도 증서에 납부한 판매세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뉴욕 대리점이나 뉴욕주 세무국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박을 등록하면 DMV에서 해당 세금을 징수합니다. 2015년 6월 1일 현재, 판매 가격이 \$230,000 이상인 경우(선 외 모터나 트레일러 등 선박과 함께 판매한 품목도 모두 포함), \$23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 원본 매도 증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 작성을 마치고 표지에 서명한 양식 **DTF-802\*\*** 및
- 판매자/기증자가 작성하고 뒷면에 서명한 양식 **DTF-802\*\***, 선박을 공정 시장 가격 미만으로 구매한 경우, 또는 선박을 증여한 경우(관계 불문).
- 판매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DTF-803\*\***을 작성하십시오.
- 선박을 다른 주에서 구매하였고 해당 주에서 판매세를 납부하기 위해 용자를 신청하는 경우, 양식 **DTF-804\*\***를 작성하십시오. 원본 매도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DTF 양식은 차량국 사무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주 세무국에서도 제공합니다. 또한 DMV(dmv.ny.gov) 및 세금 및 재무 관리국(www.tax.ny.gov)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증명

- 같은 법인 명의의 뉴욕주 보트 등록증이나 소유증 또는
- 뉴욕주 법인 증명서 증명필 사본 또는
- 뉴욕주 법인만 해당:
  - 뉴욕주 국무부에서 발급한 하자가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 또는
  - 뉴욕주 국무부에서 발급한 서류 접수증
- 다른 주 법인만 해당:
  - 거주지 주 정부에서 발급한 법인 증명서 증명필 사본 또는

- 뉴욕주 국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 또는 대외 입찰 서류.
- 법인 DBA의 경우: 뉴욕주 국무부에서 발급한 서류 접수증(해당 DBA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비인가 혐회의 경우: 단체 종류에 따라 증빙 서류 종류가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동업자 관계 증빙 자료

- 동업 관계 증명서 제출(카운티 서기관에게 제출한 것) 및
- 선박 하나에 동업자 또는 공동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업자 관계 증서 또는 공동 소유권(양식 MV-83T\*)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DBA의 경우: 카운티 서기관이 발급한 DBA 서류 접수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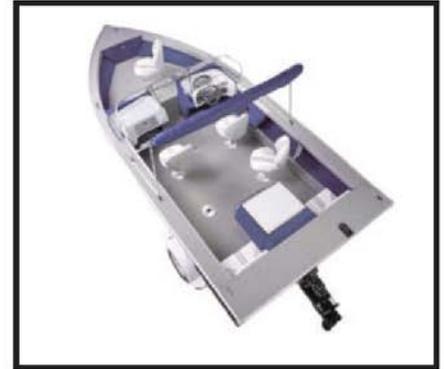
## 보험 가입 증명

선박을 등록할 때는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선박 종류”

### 무개

노 젓는 배, 중앙 콘솔 소형 모터보트, 보라이더(bow rider)나 폰툰 보트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 선박.



### 캐빈

커디(cuddy)나 크루징 보트 등 승객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는 선박.



## 하우스

숙식 및 목욕 시설 등을 제공하며 보통 이동 속도가 느리고,  
장거리 크루즈 용도로 쓰이지 않는 선박.  
수상 스키와 같은 활동적인 항해 용도로 쓰이지 않음.



## 기타

레이싱, 수상 모터사이클, 수륙 양용 자동차, ATV/보트, 에어 보트,  
특수 제작품(novelty craft), 수초 제거선 등.

